

# 성직자 주차 허가증 신청서



## 일반 지침

NYCDOT는 종교법인이나 협회에 주차 허가증을 발급하여 표지판으로 지정된 특정 "주차 금지" 구역에 매년 제한된 기간 동안 성직자 구성원의 주차를 허용합니다.

모든 교파의 종교법인 또는 협회의 예배나 의식을 주당 20시간 이상 집행하거나 주재하는 성직자가 소속된 종교법인 또는 협회는 성직자 주차 허가증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최대 세(3) 개의 차량 번호판이 기재된 허가증 한 개가 예배당에 발급됩니다. 허가증은 일 년 동안 유효합니다. 갱신 패키지는 허가증 만료일 두 달 전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신청 절차

성직자 주차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해당 성직자를 대신해 종교법인 또는 협회가 신청서를 허가증 및 고객 서비스(Permits & Customer Service) 부서에 필수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종교법인으로서 예배당의 상태와 해당 예배당 위치가 종교 의식에 사용되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허가증에 번호판이 표시된 성직자는 차량 정보 및 성직자 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첨부 서류와 함께 승인된 신청서는 영업일로 10일간이 처리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서류 사본을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1. 뉴욕주 법인 설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또는 섹션 501c.(3)에 따라 해당 예배당을 면세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미국 국세청(Department of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서한.
2. 종교법인이 해당 건물을 주로 예배를 위한 모임 장소로 사용함을 입증하는 건물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종교법인이 소유자로부터 해당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건물 소유자로부터의 서면 진술서 공증본.
3. 뉴욕시 건물법에 따라 부동산 분류가 점유 그룹 F-1(b)로 명시된 점유 증명서(Certificate of Occupancy) 또는 1938년 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해당 건물이 지어진 연도와 블록 및 로트 번호가 명시된 공식 예배당 양식에 쓰인 증빙이 있는 서한 공증본.
4. 허가증에 지정될 모든 성직자의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증.
5. 허가증의 대상이 될 각 차량에 대한 현재 승용차 등록증 또는 장기 리스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6. 허가증의 대상이 될 각 차량의 현재 보험 카드.
7. 허가증에 지정될 모든 성직자의 성직자 자격 증빙서. 증명서가 영어가 아닌 경우 공증된 번역본과 함께 성직 서임 증명서 사본 제출.
8. 해당 종교법인 또는 협회를 대표하여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성직자의 진술서 공증본 제출.

성직자 주차 허가증 신청서

예배당:

종교법인 이름 \_\_\_\_\_

주소 \_\_\_\_\_

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IRS 면세 # \_\_\_\_\_ 연락 담당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참고: 적격 예배당에는 번호판이 최대 세(3) 개 기재된 주차 허가증이 한 개만 발급됩니다**

보험 정보

<b>차량 1</b>	성직자 이름 _____ 주소 _____ 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전화 _____ 번호판 _____ 주 _____ 연도 _____ 제조사 _____
<b>차량 2</b>	성직자 이름 _____ 주소 _____ 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전화 _____ 번호판 _____ 주 _____ 연도 _____ 제조사 _____
<b>차량 3</b>	성직자 이름 _____ 주소 _____ 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전화 _____ 번호판 _____ 주 _____ 연도 _____ 제조사 _____

허가증을 받으려면, 차량은 반드시 자격이 있는 성직자 또는 예배당이 소유, 등록, 또는 리스 중이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삼자 등록 차량은 자격이 없습니다. 소유자가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을 한 대 이상 소유한 경우, 모든 법원 소환장이 처리되어야 연간 성직자 주차 허가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뉴욕시 주차 위반국(NYC Parking Violations Bureau)에 처리되지 않은 법원 소환장이 있는 모든 차량은 허가증을 받지 못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신청서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모든 성직자들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성직자들만 이 신청서에 지정된 예배당에서의 공식 업무를 수행하거나 장례식장 또는 병원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허가증을 사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이 신청서와 관련해 거짓 진술이 있을 시 허가증 특권이 취소되고 뉴욕시 교통국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 고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담당자 이름 \_\_\_\_\_

직책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질문이 있으시면 뉴욕시 교통국 허가증 및 고객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0-30 Thomson Avenue, 2nd Floor, Long Island City, NY 11101  
전화: 646-892-1428 TTY: 212-504-4115

본 문서의 번역본은 31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nyc.gov/dot](http://nyc.gov/do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